

신구조문대비표
「항공안전법」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항공안전법 [법률 제17463호, 2020. 6. 9., 일부개정]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항공안전법 [법률 제17613호, 2020. 12. 8., 일부개정]</p>
<p>제43조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(이하 이 조에서 “자격증명등”이라 한다)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5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16. ~ 31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43조(자격증명·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(이하 이 조에서 “자격증명등”이라 한다)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15의2.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</p> <p>16. ~ 31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6조(승무원 피로관리) ①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(이하 “승무원”이라 한다)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, 비행근무시간, 근무시간 등(이하 “승무시간등”이라 한다)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등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</p>	<p>제56조(승무원 등의 피로관리) ①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(이하 “승무원”이라 한다)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원의 승무시간, 비행근무시간, 근무시간 등(이하 이 조에서 “승무시간등”이라 한다)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의 제한기준을 따르는 방법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항공운송사업자,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의 승무시간 등 또는 운항관리사의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을 15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57조의2(항공기 내 흡연 금지) 항공종사자(제46조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)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
<p>제91조(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9호 또는 제49호</p>	<p>제91조(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9호 또는 제49호</p>

<p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6. (생략)</p> <p>17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18. ~ 49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 <p>17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경우</p> <p>18. ~ 49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<신설></p>	<p>제153조의2(항공기 내 흡연의 죄) ①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제57조의2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
<p>제1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(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)</p> <p>2. ~ 15. (생략)</p> <p>② ~ ⑥ (생략)</p>	<p>제166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1. 제5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소속 승무원 또는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지 아니한 자(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)</p> <p>2. ~ 1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⑥ (현행과 같음)</p>